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3037
----------	------

2025년 9월 5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년 8월 11일 서울특별시장
- 회부일자 : 2025년 8월 14일
- 상정일자 : 제332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5년 9월 3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

1. 제안이유

「환경분쟁 조정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청원에 의한 건강영향조사가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이관되어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환경보건위원회 당연직 위원 직위 소멸로 인해 표현을 변경하는 등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강영향조사의 청원 삭제, 연관 조문 현행화

(안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9조)

나. 위원회 당연직 위원 변경 (안 제20조제3항제2호)

다. 법규 관계를 고려한 인용 방식 간소화(안 제2조, 제4조, 제6~7조)

라. 위원의 해촉 조문 현행화 (안 제23조)

마. 인용 조문 현행화(안 제17조, 제28조, 제30조)

바. 위원회 존속기한 명시(안 제26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환경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1) 창의규제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개선 의견 있음(일부반영)

- 의견내용: 위원의 결격사유 규정 유지, 공무원 의제 및
이의제기 규정 신설

- 반영사항: 위원의 결격사유 규정 유지(안 제22조제1항),
이외에는 상위법에서 위임한 바 없으므로 미반영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 의견 있음(반영)

- 의견내용: 위원회 구성할 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

- 반영사항: 성별 고려하여 위원회 구성하도록 조문 수정(안
제20조제1항)

(5) 규제개선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 (2024. 8. 8. ~ 8. 28.) 결과: 의견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작성자: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이진숙 (☎2133-7680)

Ⅲ.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임영미)

1 개정(안)의 취지

- 동 개정(안)은 (구) 「환경보건법¹⁾」 제17조에 근거하여 운영되던 ‘건강영향조사 청원’ 제도가 「환경분쟁 조정법」 전부 개정²⁾에 따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인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법”이라 한다) (‘25.1.1.시행, ’24.3.19. 전부개정) 제27조로 이관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던 (구) 「환경보건법」 제17조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
- 나아가, 현행 조례 제20조에 근거한 ‘환경보건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인 ‘환경기획관’ 직위가 사라짐에 따라 이를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와 동시에 ‘위원의 해촉 조문’을 ‘현행화’하고, 현행 조례의 ‘형식상 체계와 자구’를 올바르게 정비 하고자 하는 것임.

2 개정(안)의 주요 내용별 검토

가. 건강영향조사의 청원 삭제, 연관 조문 현행화 관련 (안 제12조 등)

1) 개정(안)의 내용

- 동 개정(안)은 (구) 「환경보건법」 제17조 및 현행 조례 제12조에 근거하여 운영되던 ‘건강영향조사의 청원’ 제도가 제21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분쟁 조정법」 전부개정 논의 과정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률(안) 대안’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법」(‘25.1.1.시행예정, ’24.3.19. 전부개정) 제27조로 이관됨에 따라,
- 현행 조례 제12조에서 인용하고 있던 (구) 「환경보건법」 제17조 ‘건강영향조사의 청원’과 관련한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

1) 환경보건법 [시행 2025. 1. 1.] [법률 제20384호, 2024. 3. 19., 일부개정] 이전의 ‘환경보건법」 [시행 2024. 9. 20.] [법률 제20384호, 2024. 3. 19., 일부개정]를 의미함.

2)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Q2S3Z1B2U1M9T1V6O1L4Q5A4B1E4I7

현행	개정안
<u>제12조(건강영향조사의 청원) ①</u> <u>시민은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자신의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에는 시장에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청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다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관할 지역에서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청원을 처리한다.</u> <u>1.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걸친 조사가 필요한 경우</u> <u>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경우</u> <u>3.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의 허가 등을 받아 설치·운영되는 사업장이 조사대상인 경우</u> <u>4. 시장의 청원 처리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u> <u>5. 그 밖에 시장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u> <u>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영향조사의 청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에 대한 검토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원의 처리를 결정하여야 한다.</u> <u>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를 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u> <u>④ 시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u>	<u><삭 제></u>

<u>하고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으면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u> <u>⑤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청원을 심의할 때 해당 청원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심의할 수 있다.</u> <u>1.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뚜렷이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u> <u>2. 다른 법률에서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경우</u> <u>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원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은 「청원법」에 따른다.</u>	
--	--

2) 검토의견

- 지난 제21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2건의 「환경분쟁조정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심사하면서, 이를 모두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아니하고 통합하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법」을 제안하였음. 그리고 동 대안은 최종적으로 '24. 2. 29.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이송되어 '24. 3. 19. 공포를 통해 전부 개정(시행일 '25.1.1)되었음.

의안명	대표발의자		위원회 대안명	제안자
환경분쟁 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 (제2119162호)	임이자 ('22.12.27.)	▶ [대안 처리]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25.1.1.시행, '24.3.19. 전부개정)	환경노동위원장
환경분쟁 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 (제2123947호)	김영진 ('23.8.22.)			

-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구) 「환경보건법」 제17조에 따른 “청원에 의한 건강영향조사 사무”가 동 위원회 대안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법」 제27조로 이관되었고,

환경보건법 제17조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법 제27조
제17조(건강영향조사의 청원) ① 국민은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자신의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청원 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청원을 처리한다. (이하 “생략”)	제27조(청원에 따른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 ① 국민은 제2조제1호의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의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원인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청원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제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라 청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아울러 ‘동 사무’를 수행하던 위원회 역시 「환경보건법」 제9조 (환경보건위원회3)) 및 제10조의2(지역환경보건위원회4))에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법」 제4조 및 제6조 상의 “중앙환경분쟁조정 피해구제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 및 “지방환경분쟁조정 피해구제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로 변경되었음.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법」 부칙 제7조(기능조정에 따른 건강피해조사 청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환경보건법」 제9조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 , 제10조의2에 따른 지역환경보건위원회 의 건강영향조사 청원 의 처리에 관련된 사무는 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가 각각 승계 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환경보건법」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 및 지역환경보건위원회 의 건강영향조사 청원 의 처리와 관련한 처분 및 결정은 이 법에 따른 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의 처분 및 결정으로 본다.

- 그리고 동 조문들을 이관한 주된 이유는 ‘여러 개별법’에 산재되어 있는 ‘환경오염 등 관련 피해 구제제도’를 ‘하나의 법률’에 통합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피해구제를 하고자 하는 것임.

환경분쟁 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 이유
① <u>환경오염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건강상·재산상의 피해를 구제</u>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따른 환경분쟁 조정제도, 「<u>환경보건법</u>」에 <u>따른</u> 직권 또는 <u>청원에 의한 건강영향조사 제도</u>,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구제 제도,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오염피해구제 제도 및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 구제 제도 등이 <u>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음.</u>
② 그러나 위 제도들이 각각 다른 기관에 의해 분산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u>환경오염피해 구제의 효율성과 신속성이 저해되는 등 국민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현재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는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 환경분쟁 조정, 구제급여 지급 제도를 환경분쟁조정피해 구제위원회로 통합·운영</u>하려는 것임.

- 따라서, (구) 「환경보건법」 제17조의 ‘청원에 의한 건강영향조사 제도’에 따라 현행 조례 제12조에 명시되어 있던 ‘청원에 의한 건강영향조사’를 삭제하고, 이와 더불어 「환경보건법」 제17조 또는 현행 조례 제12조를 인용하고 있는 현행 조례상의 조문들(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9조)을 같이 일괄 정비한 것은 ‘상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4) (구) 환경보건법 제10조의2제2항제3호 “3. 관할 구역의 제17조에 따른 건강영향조사 청원의 처리” 삭제

나. 위원회 ‘당연직 위원’ 변경 및 위원의 ‘해촉 조문’ 현행화 관련
(안 제20조제3항제2호, 안 제23조)

1) 개정(안)의 내용

- 동 개정(안)은 현행 조례 제20조에 근거한 ‘서울시’ ‘환경보건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인 ‘환경기획관’ 직위가 ’23. 12. 31.로 소멸됨에 따라 이를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그리고 ‘위원의 해촉’ 관련 조문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0조(위원회의 구성) ① ----- ----- -----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 ----- 위촉한다.
1. 위촉 위원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환경보건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환경보건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환경보건 관련 산업계 종사자, 법률 지식을 갖춘 사람	1. ----- ----- ----- ----- 종사자 또는 법률 전문가
2. 당연직 위원 : <u>시민건강국장, 환경기획관</u>	2. ----- <u>시 시민건강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 기후환경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u>
제23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2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삭 제>
5. 제1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삭 제>

2) 검토의견

① 개정(안) 제20조제3항제2호 (당연직 위원) 변경 관련

- 「환경보건법」 제10조의2 제3항 제4호(소속 공무원)에는 명시적으로 ‘동 위원회의’ ‘위원 구성원’ 中 하나로 ‘소속 공무원’을 규정하고 있음.

환경보건법 제10조의2(지역환경보건위원회)

- ① 지역의 환경보건 증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역환경보건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계획의 수립과 변경
 - 2. 관할 구역의 환경보건 증진을 위한 시책
 - 3. <삭제>
 - 4. 그 밖에 지역의 환경보건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시·도지사가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 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환경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환경보건 전문가, 2. 환경보건 관련 시민단체의 대표자, 3. 환경보건 관련 산업계 종사자, 4. 소속 공무원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또, 「환경보건법」 제10조의2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서울시는 동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0조의2의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음.
- 따라서, 개정(안) 제20조제3항제2호는 동법 제10조의2제3항 제4호가 ‘지역위원회 위원’ 중 하나로 ‘소속 공무원’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음. 즉, 상위법의 내용을 다시 조례에 구체화한 것이라 사료됨.

- 아울러, 동법 제10조의2 제4항에서는 제1항부터제3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0조2의 기준에 따라 ‘조례’로 규정할 수 있게 위임을 했음.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0조의2 (지역환경보건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환경보건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지역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해촉, 의견 청취, 자료 제출, 수당·여비, 운영세칙에 관하여는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지역위원회”로, “환경부장관”은 “시·도지사”로 본다.

-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에서는 ‘지역환경보건위원회’의 ① ‘위원구성’, ②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③ ‘의견 청취’, ④ ‘자료제출’, ⑤ ‘수당·여비’ ⑥ ‘운영세칙’의 기준을 정하고 있음.
- 따라서, 조례로 법률의 위임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의 기준 등을 준수하면서, ‘동 법령’이 별도로 정하지 않은 ‘당연직 위원’을 ‘소속 공무원’으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사료됨.
 - 왜냐하면,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 자체가 ① ‘위원구성’ 관련해 ‘위원의 수(위원장 1명 포함하여 20명 이내)’ 및 ‘성별 고려’만을 기준으로 정하였기 때문임.
- 이에 더해, 「2022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p.223에 따르면, “위원 선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의 자격을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으로 규정하거나 지방

자치단체에 두고 있는 행정기구조례에 따른 직위를 규정하는 등 가능하면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따라서, 동 개정(안)처럼 ‘시 시민건강 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 및 ‘시 기후환경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으로 ‘위원 자격’을 명시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행정의 조직과 기구가 여러 정책 환경 등에 따라 빈번하게 변화하는 점을 고려할 때, ‘당연직 위원’을 ‘그 당시 조직에 따른 명확한 직위명’으로 명시하기 보다는 개정(안)처럼 ‘당해 사무명과 일반적인 직위명(국장급)’으로 한정하여 다소 포괄적으로 그 ‘자격 기준’을 명시하는 것이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개정(안)제20조제3항의 경우, ‘민간위원’과 ‘市 소속 공무원인 당연직위원’을 모두 ‘위촉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표현이 다소 어색한바, 향후 「서울시 위원회 설치 운영 지침(24.12월)」(p.66) 및 「22년 자치법규 입안길라잡이」(p.223)⁵⁾에 근거해 규정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바꾸는 것도 고려할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사료됨.

② 개정(안) 제23조 ‘위원의 해촉’ 관련

- 개정(안) 제23조는 ‘지역환경보건위원회’ ‘위원’에 대한 ‘해촉’을 명시하는 조문으로서, 서울시의 위원회 관련 일반 조례인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해촉’ 규정인

5) (자치법규 입안길라잡이)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경우: 위원회의 위원은 ○○이 △△직에 있는사람과 …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종전에는 위원이 공무원이면 모두 “임명”으로 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위원이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는 “임명”으로,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위촉”으로 규정한다.

제8조의2를 준용하고 있음.

- 우선, **현행 조례 제23조 제5호에서 인용하고 있는 현행 조례 제18조제2항6)**은 “사무의 위탁 관련 조문”으로 위원의 해촉과 전혀 관련이 없어 개정(안)처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 인용 조문 외 현행 조례 제23조제5호의 본문 내용인 “회피 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역시 개정(안) 제23조에서 준용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제5호에 동일내용이 기 존재하여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현행	개정안
제23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2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삭 제>
5. 제1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삭 제>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위원의 위촉 해제)
① 시장 등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_
<u>5.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u>

- 이에 더해,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2항에서는 동법 시행령 제4조의3(위촉위원 해제)를 ‘지역위원회’에도 준용하도록 되어

6)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제18조(사무의 위탁)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 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있어, 동 개정(안)이 상위법인 「동법 시행령」 제4조의3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법령우위의 원칙)를 검토해야 함.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0조의2(지역환경보건위원회의 구성·운영)
② 지역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해촉 , 의견 청취, 자료 제출, 수당·여비, 운영세칙에 관하여는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 한다. 이 경우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지역위원회”로, “환경부장관”은 “시·도지사”로 본다.

-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4조의3 각호에 있는 요건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각호에 대부분 포섭되며,
- 특히,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4조의3제3호의 경우는 조문 내용 자체에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와 같은 “불확정 개념⁷⁾”을 사용하고 있어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4조의3(위촉위원의 해촉)
① 시장 등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다만, 법령 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제외 한다.	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解囑)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5.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7) 불확정개념: 행정청의 판단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법문상의 행정행위 요건을 불확정개념이라 한다. 불확정개념의 예는 ‘불공정한 행위’, ‘주거환경에 대한 위험’, ‘도시계획의 필요성’ 등과 같은 다의적이고 추상적인 법문의 표현들이다. (출처: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행정청에게 ‘요건 해석’에 있어 “많은 재량”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동 개정(안) 제23조는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4조의3(위촉위원의 해촉)
6. 1년 단위(위촉일부터 기산(起算)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출석률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직무태만] [그 밖의 사유] 7.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정의 규정’ 정비 및 ‘지역환경보건계획 조문’ 정비 관련 (안 제2조, 제7조)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 제2조는 관련 상위법인 「환경보건법」 및 「화학물질 관리법」 상의 ‘정의 규정’을 현행 조례 ‘정의 규정’(제1호~제8호)에 그대로 직접 재기재하던 ‘입법방식’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개정(안) 제7조제1항은 현행 조례 제7조상의 ‘지역환경보건 계획 수립’ 관련 조문을 관련 상위법인 환경보건법 제6조의2에 부합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8. (생략)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알권리”란 시민이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자신과 가족, 이웃 및 동료의 건강과 재산 및 환경을 보호할 목적으로 위험 상태를 확인하거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스스로 결정할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이해하며 의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7조(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환경부장	제7조(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

관이 수립한 환경보건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효과적인 실행과 환경오염 및 화학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대응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 특성을 검토하여 5년마다 서울특별시 지역환경보건계획(이하 “지역계획”으로 한다)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 “종합계획”----- ----- ----- ----- 시의 특성을 검토하여 법 제6조의2에 따라 ----- ----- -----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
--	---

2) 검토의견

- 개정(안) 제2조는 다음과 같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의견제시 에 따른 때 그 개정의 타당성 존재한다고 사료됨. 즉, 동 개정(안) 제1조에서 동 조례의 제정 목적을 「환경보건법」 및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라 명시한 바, 상위법령의 용어 정의는 자치법규에 당연히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임.

의견제시 사례

일반적으로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경우, 상위법령의 용어정의는 자치법규에도 당연히 그대로 적용되므로 법률에서 용어정의가 된 동일한 용어에 대하여 자치법규에서 다시 용어정의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치법규에 실익이 없는 규정을 두게 되어 입법경제상 타당하지 않고, 향후 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자치법규가 그에 맞추어 개정되지 못한 경우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자치법규 해석상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하여 재난안전관리조례안 제2조제9호에서 다시 정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법제처 2015. 6. 16. 회신 15-0136 의견제시 사례).

- 다만, 상위법령과 상관없이 현행 조례에서 자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알권리(제2조제8호)’ 관련 정의 규정은 개정(안)과 같이 별도로 명시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개정(안) 제7조제1항은 현행 조례 제7조제1항에서 상위법령과 다르게 별도로 정한 ‘지역환경보건계획’ ‘수립주기(5년)’를 삭제하고, ‘지역환경보건계획’ 관련 상위법인 환경보건법 제6조의2에 부합하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됨.

환경보건법 제6조(환경보건 종합계획 의 수립)	환경보건법 제6조의2(지역환경보건계획 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9조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유해인자가 수용체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를 조사·예방 및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환경보건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세워야 한다.	① 특별시장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은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제10조의2에 따른 지역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지역환경보건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거쳐 종합계획에 따른 지역환경보건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세운 날부터 5년이 지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 등에 따라 종합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지역계획을 세운 날부터 5년이 지나거나 환경부장관의 요청 등에 따라 지역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2(지역환경보건계획 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은 종합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환경보건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라. ‘서울시 환경보건위원회’의 ‘존속기한’ 관련(안 제26조의2 및 부칙)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제26조의2(존속기한)은 환경보건법 제10조의2(지역환경보건위원회) 및 현행 조례 제19조(환경보건위원회)에 근거해 설치 운영되는 ‘서울시 환경보건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26조의2(존속기한) 위원회의 <u>존속 기한은 2030년 8월 31일</u> 까지로 한다.
<u>조례 제6761호</u> <u>부칙 제2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제16조에 따른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u>	<삭제>

2) 검토의견

- ‘서울시 환경보건위원회’는 환경보건법 제10조의2(지역환경보건위원회) 규정에 따라, ‘지역의 환경보건 증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장’이 ‘재량’으로 ‘설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임의적 성격’의 ‘법령상 자문 위원회’임.
- 그리고 이에 따라, ‘다른 법령’에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는 한, 일반법인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5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야함.
 - 동 위원회의 ‘설치근거, 심의사항, 위원 구성 및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는 ‘환경보건법’ 및 ‘환경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동 위원회’의 ‘존속기한’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 동 법령의 수권을 받아 동 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현행 ‘조례’에서 역시 ‘존속기한’에 대한 별도의 규정 자체가 없음.

지방자치법 제130조 (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 (자문기관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 따라서, ‘법령상 자문위원회’인 ‘서울시 환경보건위원회’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인 2030년 8월 31일까지로 정하고자 하는 동 개정(안) 제26조의2는 그 개정의 타당성이 존재한다고 사료됨.
- 아울러, (구)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시행 2018. 1. 4.] [서울특별시조례 제6761호, 2018. 1. 4., 제정] 부칙 제2조(이하 “(구) 부칙”이라 한다.)를 삭제하는 것 역시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됨.
- 왜냐하면, 동 (구)부칙 제2조는 “2021년 12월 30일” 동 조례 개정으로 ‘위원회’ 관련 조문 번호가 제16조에서 제20조로 변동된

사항을 연동하여 반영하지 못하여 이미, 2021년 12월 30일을 기점으로 ‘위원회 존속 기한 관련’ 효력이 사실상 실효되었기 때문임.

- 즉, 2021년 12월 30일을 기점으로 ‘제16조’가 규정하는 사항은 ‘어린이 활동 공간 등’에 관한 사항이 되었고, ‘위원회’ 관련 내용이 전혀 없게 되어 (구) 부칙 제2조는 사실상 어떤 법적 효과도 가지지 못하게 되었음.

(’18. 1. 4.) 동 조례	(’21. 12. 30.) 동 조례
<u>제16조(위원회의 구성)</u>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하 “생략”)	<u>제20조(위원회의 구성)</u>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하 “생략”) [제16조에서 이동]
	<u>제16조(어린이활동공간 및 어린이 용품 관리)</u> (이하 “생략”)
관련 부칙	관련 부칙
부 칙 <제6761호, 2018.1.4.> 제2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제16조에 따른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	부 칙 <제6761호, 2018.1.4.> 제2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제16조에 따른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

- 이에 더해, (구) 부칙 제2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존속 기한’ 자체가 2018년부터 5년 후인 2023년까지임에 따라, 2025년인 현재에는 구 부칙 규정의 실질적 효력 자체도 존재하지 않음.
- 따라서, 개정(안) 제26조의2에 따라, ‘서울시 환경보건위원회’ 관련 ‘존속 기한’이 새롭게 명시되어 효력이 발생할 예정인 만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동 (구) 부칙 제2조 자체를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건강영향조사의 청원 삭제, 연관 조문 현행화 관련 (안 제12조)

- 동 개정(안)은 현행 조례 제12조에서 인용하고 있던 (구) 「환경보건법」 제17조 ‘건강영향조사의 청원’과 관련 내용이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법」 제27조로 이관됨에 따라, 이를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 입법이라 사료됨.

○ 위원회 ‘당연직 위원’ 변경 및 위원의 ‘해촉 조문’ 현행화 관련 (안 제20조제3항제2호, 안 제23조)

- 동 개정(안)은 ‘서울시’ ‘환경보건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인 ‘환경기획관’ 직위가 '23. 12. 31.로 소멸됨에 따라 이를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 이에 더해, ‘위원의 해촉’ 관련 조문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상위법령인 「환경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명시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조문에 저촉되지 않으며, 상위법의 수권 범위 내에서 조례로 동 위원회의 운영 및 구성을 정하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됨.

○ ‘정의 규정’ 정비 및 ‘지역환경보건계획 조문’ 정비 관련 (안 제2조, 제7조)

- 개정(안) 제2조는 관련 상위법 상의 ‘정의 규정’을 현행 조례 ‘정의 규정’에 그대로 직접 재기재하던 ‘입법방식’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개정(안) 제7조는 ‘지역환경보건계획 수립’ 관련 조문을 상위법인 환경보건법 제6조의2에 부합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안)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됨.

- ‘서울시 환경보건위원회’ 의 ‘존속기한’ 관련 (안 제26조의2 및 부칙)
 - ‘법령상 자문위원회’인 ‘서울시 환경보건위원회’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인 2030년 8월 31일까지로 정하고자 하는 동 개정(안) 제26조의2는 그 개정의 타당성이 존재한다고 사료됨.
 - 아울러, 2021년 12월 30일을 기점으로, 사실상 실효된 (구)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시행 2018. 1. 4.] [서울특별시조례 제6761호, 2018. 1. 4., 제정] 부칙 제2조 역시, 개정(안) 제26조의2에 따라, ‘서울시 환경보건위원회’ 관련 ‘존속 기한’이 새롭게 명시되어 효력이 발생할 예정인 만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037
----------	------

제출년월일 : 2025년 8월 11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환경분쟁 조정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청원에 의한 건강영향조사가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이관되어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환경보건위원회 당연직 위원 직위 소멸로 인해 표현을 변경하는 등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강영향조사의 청원 삭제, 연관 조문 현행화

(안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9조)

나. 위원회 당연직 위원 변경 (안 제20조제3항제2호)

다. 법규 관계를 고려한 인용 방식 간소화(안 제2조, 제4조, 제6~7조)

라. 위원의 해촉 조문 현행화 (안 제23조)

마. 인용 조문 현행화(안 제17조, 제28조, 제30조)

바. 위원회 존속기한 명시(안 제26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환경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 (1) 창의규제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개선 의견 있음(일부반영)
 - 의견내용: 위원의 결격사유 규정 유지, 공무원 의제 및 이의제기 규정 신설
 - 반영사항: 위원의 결격사유 규정 유지(안 제22조제1항), 이외에는 상위법에서 위임한 바 없으므로 미반영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 의견 있음(반영)
 - 의견내용: 위원회 구성할 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
 - 반영사항: 성별 고려하여 위원회 구성하도록 조문 수정(안 제20조제1항)
- (5) 규제개선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 (1) 입법예고 (2024. 8. 8. ~ 8. 28.) 결과: 의견없음
-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작성자: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이진숙 (☎2133-7680)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환경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를 “「환경보건법」 및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알권리”란 시민이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자신과 가족, 이웃 및 동료의 건강과 재산 및 환경을 보호할 목적으로 위험상태를 확인하거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스스로 결정할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이해하며 의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4조의 제목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보건과 화학물질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환경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제3항 중 “시와”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종합계획“”을 ““종합계획””으로 하고 “서울특별시의 특성을 검토하여 5년마다”를 “시의 특성을 검토하여 법 제6조의2에 따라”로, ““지역계획“으로 한다)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를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법 제7조제3항에 따라”를 “시의 환경계획 수립 시”로, “시의 환경계획에 포함시켜야”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로 한다.

제11조제5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 또는 제12조”를 각각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를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3조의2”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및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또는 제12조”를 각각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제1항또는 제12조”를 “제1항”으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4조제1항 중 “법 제15조제1항·제2항 및 법 제17조”를 “법 제15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16조제3항 중 “법 24조”를 “법 제24조”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제24조”를 “제28조”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를 “위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위원회를 둔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관리계획”을 “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제20조제1항 중 “구성한다”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한다”를 “위촉한다.”로, 같은 항 제1호 중 “종사자, 법률 지식을 갖춘 사람”을 “종사자 또는 법률 전문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시민건강국장, 환경기획관”을 “시 시민건강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 기후환경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간사1명”을 “간사 1명”으로, “부서장으로 하며 서기는 담당 팀장이 된다”를 “부서장이 맡고 서기는 담당 팀장이 맡는다”로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2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의2에 따라 회의록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30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중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관리계획”을 “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2조”를 “제16조”로 한다.

제30조제1항제1호 중 “법 제24조의2”를 “법 제24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5조제3항”을 “제29조제3항”으로 한다.

조례 제6761호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보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보	제1조(목적) ----- 「환경보	제1조(목적) ----- 「환경보	제1조(목적) ----- 「환경보
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건법」 및 「화학물질관리법」	건법」 및 「화학물질관리법」	건법」 및 「화학물질관리법」
서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	서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이 시민건강 및 생태계에 미치는	이 시민건강 및 생태계에 미치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
영향과 피해를 조사·규명하여	영향과 피해를 조사·규명하여	-----	-----	-----
예방·저감 대책을 마련하고,	예방·저감 대책을 마련하고,	-----	-----	-----
사전예방의 원칙에 따른 시민의	사전예방의 원칙에 따른 시민의	-----	-----	-----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환경오염과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환경오염과	-----	-----	-----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	-----	-----
생태계를 보호·유지하는 것을	생태계를 보호·유지하는 것을	-----	-----	-----
목적으로 한다.	목적으로 한다.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알권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알권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알권
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리”란 시민이 환경유해인자로	리”란 시민이 환경유해인자로	리”란 시민이 환경유해인자로
같다.	같다.	부터 자신과 가족, 이웃 및 동료	부터 자신과 가족, 이웃 및 동료	부터 자신과 가족, 이웃 및 동료
1. “환경보건“이란 「환경보건	1. “환경보건“이란 「환경보건	의 건강과 재산 및 환경을 보호	의 건강과 재산 및 환경을 보호	의 건강과 재산 및 환경을 보호
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	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	할 목적으로 위험 상태를 확인	할 목적으로 위험 상태를 확인	할 목적으로 위험 상태를 확인
조제1호에 따라 환경오염과	조제1호에 따라 환경오염과	하거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하거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하거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유해화학물질 등(이하 “환경	유해화학물질 등(이하 “환경	필요한 조치를 스스로 결정할	필요한 조치를 스스로 결정할	필요한 조치를 스스로 결정할
유해인자“라 한다)이 사람의	유해인자“라 한다)이 사람의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이해하며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이해하며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이해하며
건강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건강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의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의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의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을 조사·평가하고 이를 예방	을 조사·평가하고 이를 예방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환경성질환”이란 역학조사	2. “환경성질환”이란 역학조사			
(疫學調査) 등을 통하여 환경	(疫學調査) 등을 통하여 환경			

유해 인자와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질환으로서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질환을 말한다.

3. “위해성평가”란 환경유해인자가 사람의 건강이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기 위하여 환경유해인자에의 노출과 환경유해인자의 독성(毒性) 정보를 체계적으로 검토·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역학조사”란 특정 인구집단이나 특정 지역에서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질환과 사망 등 건강피해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환경유해인자와 질환 사이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5. “환경매체”란 환경유해인자를 수용체(受容體)에 전달하는 대기, 물, 토양 등을 말한다.

6. “수용체”란 환경매체를 통하

여 전달되는 환경유해인자에 따라 영향을 받는 사람과 동식물을 포함한 생태계를 말한다.

7. “사고대비물질”이란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화학사고 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제3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화학물질을 말한다.

8. “알권리”란 시민이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자신과 가족, 이웃 및 동료의 건강과 재산 및 환경을 보호할 목적으로 위험상태를 확인하거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스스로 결정할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이해하며 의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4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① 「환경보건법」, 「화학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보건과 화학물질에 관하여 다른

물질관리법」 및 그 밖의 환경
보건과 화학물질에 관한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
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
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동자의 안전과 보
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
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② (생
략)

③ 사업자는 환경오염 및 화학
사고의 예방 및 체계적 대응을
위한 시와 자치구의 시책에 적
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 시행 등) ① 시장은 법 제6조
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수립한
환경보건종합계획(이하 “종합
계획”이라 한다)의 효과적인 실
행과 환경오염 및 화학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
대응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 특
성을 검토하여 5년마다 서울특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환
경보건법」(이하 “법”이라 한
다) 제3조에 따라 「산업안전보
건법」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
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② (현
행과 같음)

③ -----

---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
다)와 -----
---.

제7조(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 시행 등) ① -----

----- “종합
계획”-----

----- 시의
특성을 검토하여 법 제6조의2에

별시 지역환경보건계획(이하
“지역계획“으로 한다)이라 한
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④ 법 제6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지역계획의 사업 시행에 드
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범
위에서 사업비를 변경하는 경
우

2. 계산착오, 오기, 누락이나 이
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
정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⑤ ~ ⑧ (생 략)

⑨ 시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
라 지역계획의 주요 내용을 시
의 환경계획에 포함시켜야 한
다.

제11조(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역
학조사 및 결과조치) ① ~ ④
(생 략)

⑤ 시장은 제1항 또는 제12조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

따라 -----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

②·③ (현행과 같음)

<삭 제>

⑤ ~ ⑧ (현행과 같음)

⑨ ----- 시의 환경계획 수립
시 ----- 반영
하도록 노력하여야 --.

제11조(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역
학조사 및 결과조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제1항-----

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법 제14조제4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시장은 제1항 또는 제12조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영향조사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⑦ 시장이 실시하는 제1항 또는 제12조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환경부장관에게 지원 요청할 수 있다.

⑧ 환경유해인자 관련사업자(제1항 또는 제12조에 따른 조사의 원인이 되는 환경유해인자의 발생과 관련이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시장이 제1항 또는 제12조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그 조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⑥ ----- 제1항-----
----- 「환경보건
법 시행령」 제13조의2-----

-----.

⑦ ----- 제1항-----

-----.

⑧ ----- 제1항-----

----- 제1항-----

-----.

1. ~ 3. (생략)

⑨ 누구든지(환경유해인자 관련 사업자는 제외한다) 시장이 제1항또는 제12조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그 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짓 진술 또는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건강영향조사의 청원) ①

시민은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자신의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청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다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관할 지역에서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청원을 처리한다.

1.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걸친 조사가 필요한 경

1. ~ 3. (현행과 같음)

⑨ -----
----- 제1
항-----

-----.

<삭 제>

우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경

우

3.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의 허
가 등을 받아 설치·운영되는
사업장이 조사 대상인 경우

4. 시장의 청원 처리가 불충분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조사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제
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

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영
향조사의 청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에 대한 검토와 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청원의 처리
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를
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도 불구하고 긴급히 조사할 필
요가 있으면 지역위원회의 심의
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청원

을 심의할 때 해당 청원의 내용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심
의할 수 있다.

1.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
한 이익을 뚜렷이 해칠 우려
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서 비밀 또는 비
공개로 규정된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청원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은 「청원법」
에 따른다.

제14조(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시장은 법 제14조, 법 제15조
제1항·제2항 및 법 제17조에
따른 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
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③ (생략)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대책의
수립·이행에 필요한 경우 해당
환경부장관에게 재정적·기술
적 지원을 요청 할 수 있다.

제14조(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 법 제15조
제2항-----

-----.

②·③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6조(어린이활동공간 및 어린이
용품 관리) ①·② (생 략)

③ 시장은 제2항 및 법 24조에
따라 어린이 용품에 함유되어
어린이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환경유해인자의 종류 및 유해성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시
민에게 알릴 수 있다.

제17조(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중
합정보센터) ① 시장은 제24조
에서 정한 정보, 그 외의 환경유
해인자에 대한 정보의 수집과
생산 및 시민 교육·홍보 등을
위해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중
합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
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9조(환경보건위원회의 설치 목
적 및 기능) 시장은 환경보건정
책의 개발과정에 시민참여를 보
장하고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하
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
문한다.

1. 제7조의 관리계획의 수립 및

제16조(어린이활동공간 및 어린이
용품 관리) ①·② (현행과 같
음)

③ ----- 법 제24조--

-----.

제17조(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중
합정보센터) ① ---- 제28조--

-----.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환경보건위원회의 설치 목
적 및 기능) -----

위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위원회를
둔다.

1. ----- 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2. (생략)

3. 제12조 청원에 관한 사항

4. ~ 11. (생략)

제2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생략)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위촉 위원 : 서울특별시의회의원, 환경보건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환경보건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환경보건 관련 산업계 종사자, 법률 지식을 갖춘 사람

2. 당연직 위원 : 시민건강국장, 환경기획관

④ (생략)

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2. (현행과 같음)

<삭제>

4. ~ 11. (현행과 같음)

제20조(위원회의 구성) ① -----

-----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

----- 위촉한다.

1. -----

----- 종사자 또는 법률 전문가

2. ----- 시 시민건강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 기후 환경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

④ (현행과 같음)

⑤ -----

간사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의 부서장으로 하며 서기는 담당팀장이 된다.

제23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5. 제1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24조(회의) ①·② (생략)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신설>

제28조(화학물질 등 정보공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시

간사 1명-----
----- 부
서장이 맡고 서기는 담당 팀장이 맡는다.

제2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24조(회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의2에 따라 회의록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의2(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30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8조(화학물질 등 정보공개) ①

민에게 공개한다.

1. 제7조에 따른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관리계획에 대한 정보

2. (생략)

3. 제12조의 어린이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4. ~ 8. (생략)

② (생략)

제30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 연구기관, 단체 및 자치구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환경유해인자의 어린이 용도로의 사용·판매를 줄이기 위하여 법 제24조의2에 의한 자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사업자

2. (생략)

② (생략)

③ 시장은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관련 환경·안전교육 등을 위해 제25조제3항에서 정한 교육기관, 민간단체, 그 밖의 관계

-----.

1. ----- 계획-----

2. (현행과 같음)

3. 제16조-----

4. ~ 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1. -----

-- 법 제24조의3-----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제29조제3항-----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u>조례 제6761호</u> <u>부칙 제2조(위원회의 존속기한)</u> <u>제16조에 따른 위원회의 존속기 한은 5년으로 한다.</u>	----- ----- -----. <u><삭 제></u>
--	---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업무 변동사항 반영(청원에 의한 건강영향조사 삭제), 시 환경보건위원회 당연직 위원 변경, 용어 및 문구를 정비하기 위한 사항으로 별도 비용이 수반되지 않음

4. 작성자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이진숙 (☎ 2133-7680)